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

다양한 유형별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개 요

○ 대 상

- 1)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2)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

○ 기 간

| 구분 | 행사기간 | 사전신청 | 비고 |
|-----|--------------|------------|---------------------------------|
| 하반기 | 6/13 ~ 11/30 | 하반기 공고일 이후 | *상반기 / 하반기 분배 지원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 |

○ 사업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도내 여행사가 단체 모객 시 활용한 차량 임차비를 여행사에 지원

※ 여행상품 필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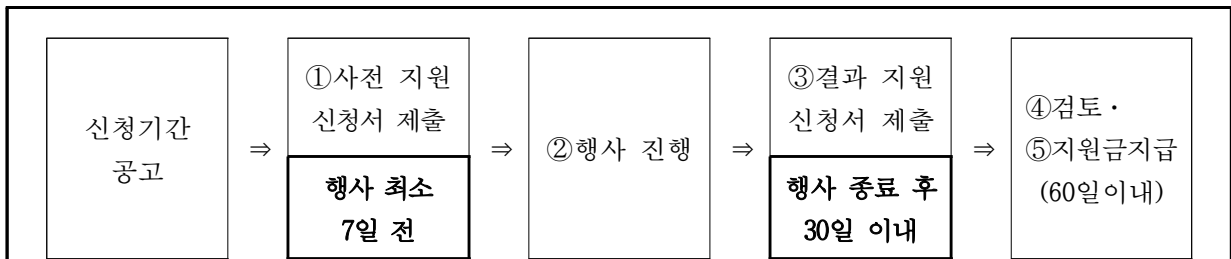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관광 | - 유료 관광지 또는 - 승마체험, 골프, 해양레저 등 레저관광 또는 - 기념품점, 재래시장 ※ 제주관광 저해를 조장하는 여행상품 제외 | 2곳 이상 |

□ 지원내용

(단위 : 원)

| 구분 | 지원금액 | | | | 비고 |
|--|---------|---------|---------|---------|---|
| | 성수기 | | 비수기 | | |
| | 1박 | 2박 | 1박 | 2박 |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여행상품 필수조건> - 인원: 10인 이상 - 관광: 유료관광지·레저관광 등 2곳 이상 *성수기: 3~5월,9~11월 / 비수기: 6~8월 *성수기·비수기 적용기준은 여행상품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 * 지원금액 범위내 실비지원 / 차량 임차시, 해당차량 최소 탑승인원(중형16, 대형26인)미만일 경우, 실제 탑승인원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업체당 연 3,500천원 *상반기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지원액을 포함하여 연 최대한도 내 지원 (상반기 지원한도 소진 업체는 하반기 지원 불가) | | | | | |

□ 지원절차



① 사전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사전신청서, 행사일정표,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해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경우 제주 영업소(사업장)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② 행사 진행

※ 행사인정 기간: 최초 공고일 이후 진행된 행사(공고일 이전 행사는 소급적용 불가)

③ 결과 지원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제출기한(30일) 내 지원신청서 미 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 |
|----------|--|
| 제출 서류 | 1. 결과신청서 2. 서약서 3. 통장사본 4. 관광객 명단 ※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내용 기입 및 증빙사진 제출 5. 행사지시서 또는 여행상품 설명서(자체서식 대체 가능) 6. 행사 전세버스 임차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혹은 카드전표) 7. 행사 및 차량 증빙자료(사진) ※ 유료 관광지 2곳 사진 필수 |
|----------|--|

④ 결과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지원제외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도외 단체 대상 「수학여행단 지원 공고」,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유형별 탐나는전 지원사업 통합 공고(동창/동문/기타단체, 제주도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 등)」 등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사전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최소인원(10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신청 및 문의

- 신청: 이메일 신청 E-mail) incentive@jta.or.kr
- 문의: 국내마케팅팀 고영민 과장 Tel) 064-741-8782
장혜리 팀장 Tel) 064-741-8771